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1.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관련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삭제하여 업무 추진에 신속성,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함.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삭제>

제5조 ~ 제13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접수·등록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10조(헌혈자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한 날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